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2월 1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제안이유

○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구체화 하고, 타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급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고, 다른 장학금 수혜자 중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 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장학생 자격을 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너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p>	<p>○ 다소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57호
의결 연월일	2006. 12. 21

제안년월일 : 2006년 12월 12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장학생의 자격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자만 제외하는 것은 너무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로 판단하여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장학생 자격을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함.(안 제2조 2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2항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동일함.』

신·구조문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생략</p> <p>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 <u>등록금 전액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생략</p> <p>②-----</p> <p>-----</p> <p>----- <u>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u></p>

[수정안 포함]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고등학생·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로서”를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장학금을”를 “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u>고등학생·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로서</u>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하되,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②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u>장학금을</u> 받는 자는 제외한다.</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1.~4.(생 략) ②·③(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 <u>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u>-----<u>각호의 어느 하나</u>-----.</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 ----- -----<u>부천시에서 지급하는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u>----- -----.</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4.(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p>